

부산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4가단305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C

3. D

변 론 종 결 2024. 6. 4.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150,774원과 그 중 30,149,841원에 대하여 2023. 9. 5.부터 2024. 4. 5.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3.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2)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3. 접수 제34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23.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취소한다.(2) 피고 D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69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부산진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에게 2023. 3.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3. 접수 제347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3. 3. 22. 당시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23. 4. 1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3. 9.
5.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21. 8. 9. 15,16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여 당시에는 담보 제공 약정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3. 접수 제3477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피고 B이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요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